

[2018학년도]

안산동산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항(안)

※ 본 요항은 가안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8월초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율형사립고
안산동산고등학교
Dongsan Christian High School

I.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1단계	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	2017.11.09.(목)~11.14.(화)	*작성: 해당 중학교 *접수: 본교 접수처
	전형 기간	2017.11.15.(수)~11.16.(목)	*본교 소강당
	합격자 발표	2017.11.17.(금)이내	*본교 홈페이지
2단계	서류 접수	2017.11.17.(금)~11.20.(월)	*접수: 본교접수처
	면접일	2017.11.25.(토)	장소 : 본교 (시간은 추후공지)
	합격자 발표(최종)	2017.11.29.(수)이내	*본교 홈페이지
추가모집 (미달시)	원서 접수	2017.11.30.(목)~12.1.(금)	*접수: 본교접수처
	면접일	12.4.(월)	*장소 : 본교
	합격자 발표	12.5.(화) 이내	*본교 홈페이지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모집 과정 및 인원 (남·여 396명, 학급 당 학생 수 33명/12학급)

전형구분	전형유형	모집인원
정원 내	일반전형	198명
	지역인재전형	78명
	지역추첨전형	40명
	사회통합전형	80명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	정원의 2% 별도 선발 (7명 이내)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정원의 3% 별도 선발 (11명 이내)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 외로 선배치, 지원자격 참고

※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모집인원(정원 내)에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모집 정원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Ⅲ. 지원자격

1. 공통조건

-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이 있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 위 나~라 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일컬음

2. 전형별 지원자격

가. 정원 내

일반전형	지원 자격의 공통조건 중 어느 한 항을 충족하는 자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의 공통조건 중 어느 한 항을 충족하는 자로, 2016년 3월 31일 이전부터
지역추첨전형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의 공통조건 중 어느 한 항을 충족하는 자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순위별 지원 자격 참고 * 2순위,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을 부여함

나.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	특례입학 안내 참조 (p.11)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에 포함되어 정원 내로 선발하되, 탈락자(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11명 이내)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심신장애자)의 전형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생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발치한다.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순위별 지원 자격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1순위 자격(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 ③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준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에 해당
- ④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차상위계층)에 해당
- 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 **⑥번 학교장 추천 학생의 경우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부적정 예시 :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2순위 자격(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조손가정 학생
- ② 소년·소녀 가장(형제·자매 포함)
- ③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3순위 자격(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순교자 자녀
- ⑧ 해외 선교사 자녀(선교사로 2년 이상 해외에 파견 중인 자의 자녀)

* 2·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별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분위 기준은 붙임 자료 안내)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자격 기준 안내 [붙임5] (p.21~23)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안내 [붙임6] (p.24)

IV. 전형방법

전형구분	전형방법
일반 전형	<1단계> · 내신 성적 250점 만점으로 1.5배수 선발
지역인재 전형	<2단계> · 1단계 점수(250점 만점) + 서류·면접 점수(50점 만점) = 총점(300점 만점) 순으로 최종 선발
지역추첨전형	<1단계> · 공개 추첨으로 1.5배수 선발 (성적 미반영) · 지원자가 1.5배수에 미달할 경우 추첨 없이 1단계 전원 합격 <2단계> · 서류·면접 점수(50점 만점)
사회통합 전형	<1단계> · 공개 추첨으로 1.5배수 선발 (성적 미반영) · 1순위 대상자 중 우선 추첨 선발하고, 미달 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추첨 선발 · 우선 순위별 모집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 · 지원자가 1.5배수에 미달할 경우 추첨 없이 1단계 전원 합격 <2단계> · 서류·면접 점수(50점 만점) 가. 선발인원의 60%를 1순위에서 우선 선발 나.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서류·면접)성적 순으로 선발
특례입학대상자 (정원 외)	<1단계> · 내신 성적 250점 만점으로 1.5배수 선발 <2단계> · 1단계 점수(250점 만점) + 서류·면접 점수(50점 만점) = 총점(300점 만점) 순으로 최종 선발

- *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추첨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할 수 없음
- * 1단계 합격자는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면접에 미응시하면 합격 사정에서 제외됨

1. 1단계

(1)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구분	내 용						
가. 선발요소	교과성적(250점) + 출결점수(감점)						
나. 반영교과	이수한 전 과목						
다. 교과성적 산출방법	1) 성취수준에 따른 환산 점수						
		성취수준	A	B	C	D	E
		환산점수	5	4	3	2	1
	2) 반영비율						
		구분	교과활동상황(100%)				계(100%)
			1학년(12%)	2학년(32%)	3학년(48%)	체육·예술교과(8%)	
		반영점수	30점	80점	120점	20점	2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반영 (단,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시 수행평가 결과 반영여부는 중학교 자율 결정) · 3학년은 1학기 80점과 2학기 40점을 합산한 120점을 반영 * 졸업자의 경우 3학년은 각 학기 60점씩 총 120점 반영 						
	3)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						
		구분	학년	학기	계 산 공 식	점수	비율
일반교과	1학년	1학기	2학기	$3 \times \frac{\text{반영과목별 환산점수 총합}}{\text{반영과목수}}$	15	12%	
				$3 \times \frac{\text{반영과목별 환산점수 총합}}{\text{반영과목수}}$	15		
	2학년	1학기	2학기	$8 \times \frac{\text{반영과목별 환산점수 총합}}{\text{반영과목수}}$	40	32%	
				$8 \times \frac{\text{반영과목별 환산점수 총합}}{\text{반영과목수}}$	40		
	3학년	1학기	2학기	$16 \times \frac{\text{반영과목별 환산점수 총합}}{\text{반영과목수}}$	80	48%	
				$8 \times \frac{\text{반영과목별 환산점수 총합}}{\text{반영과목수}}$	40		
체육 예술 교과		1,2,3학년		$\frac{20}{3} \times \frac{(3 \times a + 2 \times b + 1 \times c)}{\text{3년간이수과목수}}$	20	8%	
* 학기별 점수계산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산출							
라. 출결점수	출결점수 = - (무단결석 일수 × 0.1 점) 내신성적이 반영되는 학기 동안의 출결 상황 중 무단결석만 감점하여 적용함 * 무단 조퇴, 지각, 결과 3회는 1일로 처리함, 최댓값 0.5점						
* 학생의 전교과목 성적이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없을 경우 (다음의 가, 나, 다, 라는 우선 순위임) 가. 1,2,3학년 성적 전체가 없을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학년 내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2학기 성적으로, 2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함 다. 학년 내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 차상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대체함 라. 학년 내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차상위 학년도 없을 경우 차하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 별로 대체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하여 과목별 성취도가 없는 학기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함							

- 2018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 성적 반영지침에 따르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 1단계 고득점 순서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인원은 모집 정원의 1.5배수로 함
- 1단계 전형 후 1.5배수를 초과하더라도 1단계 성적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나이스(교육행정시스템)를 통해 내신 성적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 선발 기준

- 1단계 전형
 - 교과 성적 중 3학년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2학년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1학년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순으로 성적이 높은 자
 -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 2단계 전형
 - 서류·면접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3학년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2학년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1학년 성적이 높은 자
 - 교과 성적 중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순으로 성적이 높은 자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를 통해 결정

※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반영

- 검정고시 과목별 원점수에 따라 차등 반영할 예정(2017년부터 내신성적 산출평가 폐지)
-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

(2) 지역추첨, 사회통합전형

-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 진행

2. 2단계 (모든 전형 공통, 1단계 합격자만 해당)

(1) 평가 영역 : 서류평가, 면접평가

(2) 평가 방법

- 검토 자료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교사추천서
- 평가 방법 : 3인의 입학전형위원이 서류 평가 후 면접대상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2단계 최종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http://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 금지 사항

- ①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름 등)을 절대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기재할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겉표지 제외)
- ②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응시 경험, 한국어(국어)·수학·과학·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나 응시 경험,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이나 응시 경험, 각종 자격증 취득사항,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내 및 교외 수상 실적, 대회 참석 내용이나 경험 등 기재불가.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각종 자격증 취득 사항 기재 시 0점 처리)
※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해도 감점처리 됨
☞ 간접 기재 예시: “열심히 준비하여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함.”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음.” 등
- ③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신설)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시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영역

- 학생의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자격증 취득 사항 등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V.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사용)

1. 공통 제출 서류 및 원서 접수 방법

대상자	시기	공통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중학교 졸업 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	1단계	<p>1) 중학교 담임교사가 나이스 상 에서 작성·접수하여 출력 * 원서작성시 나이스 상에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를 선택해야 하며, 동의서는 문서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접수 이후 번심으로 인한 원서 반려 불가함 하므로 신중히 작성 후 접수</p> <p>2) 본교 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 (접수 시간 09:00~17:00, 토·일 휴무) * 중학교 담임교사가 온라인 원서 작성 마감 후 반드시 '포털전송'을 눌러야 접수처에서 원서 확인 가능</p> <p>3) 재학증명서 (지역인재전형, 지역추첨전형) -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자료실] 참고 (2016.3.31.이전부터 재학 증임을 명시해야 유효함)</p> <p>4)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 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단계 접수 시 증명서류 제출해야 함 (개별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p>
	2단계 (1단계 합격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1부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 학교생활기록부II 4부 -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제외하고 출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3부는 모든 인적사항과 출신학교까지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출해야 함 • 교사추천서 1부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출 <p>* 고입 전용 홈페이지*는 1단계 원서 접수시 접수처에서 공지</p>

2.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본교 방문하여 작성)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원본 제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2매 (반명함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1부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 봉사 및 체험활동 증명 서류 4부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부는 모든 인적사항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출해야 함 • 지도자 추천서 1부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출 ※ 지도자 추천자격 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학교 교장, 교사의 추천 가능 ② 검정고시 합격자가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③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 (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 합격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제외함) ④ 이상의 항목에 없는 지도자에 대한 추천자격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p>※ 고입 전용 홈페이지*는 1단계 원서 접수시 접수처에서 공지</p>

3. 사회통합전형 개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친권자 기준으로 발급) · 학부모·학교장 확인서 ※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입학안내-자료실] 참고 · 2·3순위 지원자 공통제출서류(소득8분위 이하 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구성원 총납부액 적용) ※ 2017.1월~10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대상자	개별 서류 (발급처) ※각 1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보훈지청)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보훈지청)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법정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차상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구성원 총납부액 적용) ※ 2017.1월~10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차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모든 서류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발급(인터넷 가능)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손 가정 학생 : 공통 서류, 사실관계 확인서(동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소년·소녀 가장 : 공통 서류, 사실관계 확인서(동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북한 이탈주민 (정원의 대상)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 학력보증서 · 순직군경 순직소방대원·순직교원 자녀 : 순직확인서(해당 기관의 장 발급) · 다문화 가정 자녀 :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외국인 등록 증명서(동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해당 기관의 증명 서류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면단위 이하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재학 기간이 기재된 서류)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재학 기간이 기재된 서류) · 한부모자녀 (비경제적) : 공통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동주민센터)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보험급여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다자녀가정 자녀 : 공통 서류 · 준사관·부사관 자녀 : 재직증명서(재직 기관)-재직기간 명시 · 순교자 자녀 : 사망증명원(교단이나 선교단체가 확인한 것) · 해외 선교사 자녀 : 사실관계증명서(교단이나 선교단체가 발급한 기간 명시된 증명서)

* 제출할 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위의 표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VI. 특 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으로 처리하되, 선발 시기는 본교 전형일정에 맞추어 실시
 ·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 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입학정원의 2%이내 에서 정원 외로 본교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함.

1. 모집인원 : 7명 (정원의 2% 이내)
2. 모집시기 : 신입생 모집과 동일
3. 전형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250점) ※ 일반전형과 동일	※ 국내학교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1단계	※ 학생의 전교과목 성적이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없을 경우 (다음의 가, 나, 다. 라는 우선 순위임) 가. 2,3학년 성적 전체가 없을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나. 학년 내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2학기 성적으로, 2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 다. 학년 내 1,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 차상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적용한다. 라. 학년 내 1,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차상위 학년도 없을 경우 차하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적용한다.	
2단계	내신성적(250점) + 서류 면접(50점) = 300점	

4. 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귀국자의 특례입학 관련 재학기간 문제(비연속일 때)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가 아님.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 근거 3월 전·편입자는 제외)

(1) 외국 거주·실체류·재학 기간

구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기간 및 실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2) 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정기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년을 제한적으로 적용

5.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사용)

구분	제출서류
1단계 <방문접수>	①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기준으로 발급) ② 사진 2매 ③ 지원자 및 보호자 도장 ④ 생활기록부Ⅱ 1부 ⑤ 안산동산고등학교 특례입학 지원서 <홈페이지-입학안내-자료실 참조>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홈페이지-입학안내-자료실 참조> ⑦ 해당자별 추가제출서류 <홈페이지-입학안내-자료실 참조>
2단계 <방문접수>	① 자기소개서 1부 ② 교사추천서 1부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출) ③ 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 고입 전용 홈페이지*는 1단계 원서 접수시 접수처에서 공지 *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제외하고 출력

VIII.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 모집구분은 전기이며, 모집단위는 경기도 광역 단위 선발
- 모집 인원은 학급당 33명 12학급으로 선발 시 남녀 비율을 고려하지 않음
- 원서 접수 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려 안됨
- 각 모집 구분 간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타 전기 고등학교와 이중 지원을 금지함
- 본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시·도 교육청 시행 2018학년도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 학교(정시,추가) 모집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함.
 - 등록 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함.
 - 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함
- 제반 기록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전형에서 충원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 불가)
- 기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함

IX.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 변경 예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2020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영역

- 반영학년 : 2,3학년
- 반영과목 : 전과목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56(우15573) 안산동산고등학교
- 입학홍보부 : 031-490-3260~2
- 행정실 : 031-418-7783
- F A X : 031-418-7774
- 홈페이지 : <http://www.dsgo.kr>

2017년 4월 27일

안 산 동 산 고 등 학 교 장

- 붙임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자기소개서
 3. 교사추천서
 4.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5.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지원 자격 기준
 6.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VII. 전형료

- 1단계 : 5,000원
 - 2단계 : 25,000원(1단계 합격자에 한함)
- * 전형료는 본교 방문하여 원서 접수 시 수납

붙임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안산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자기소개서

※ 견본

안산동산고등학교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 수험번호	
* 접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_____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작성) _____ - * * * * *

연 락 처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출신중학교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중학교 졸업예정/졸업
 검정고시: _____ 년 월 _____ 지구합격

2017년 월 일

지원자 _____ 자필 서명

안산동산 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등을 기술하십시오.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시 10% 이상 감점 처리됨),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자격증 취득 사항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기재 시 0점 처리됨)
3. 본 서식은 견본용이며 실제 작성은 지정된 접수사이트(원서 접수 시 공지)를 통해 작성·출력 후 본교 접수처에 제출 하십시오.
4.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묶어 주십시오.
5.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 나의 꿈과 끼, 인성(1,500자 이내)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건학이념과 연계해 안산동산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제외 900자 이내)
-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제외 600자 이내)

<지원동기 등>

1.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알아!) 지원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특성,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같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하자!) 지원동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내용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지원동기를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3. (노력한 과정을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에는 그 학교에 지원하기까지의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신이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노력 및 그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앞으로의 비전을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 그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만큼, 그 학교에 입학한 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것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자신의 비전이 일치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5. (체계적으로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 그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와 노력의 과정은 중학교 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비전과 진로계획 등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 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지원동기를 보여준다면 플러스 점수가 될 것입니다.

<인성과 관련된 경험 등>

1.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인성영역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인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나열해서 쓰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례나 에피소드를 쓰자!) 인성영역을 쓸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성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사례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자!) 지원하는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인성영역을 쓸 때에는 성장과정 속에서 형성된 본인의 모습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진부한 표현은 쓰지 말자!) 인성영역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정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간결하게 쓰자!) 인성영역에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교사 추천서

* 수험번호	
* 접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_____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_____ - * * * * * * * *
(앞자리만 작성)

연 락 처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출신중학교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중학교 졸업예정/졸업
검정고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지구합격

추천교사 기재 사항

성 명 _____ 직 위 _____

이 메 일 _____ 휴 대 전 화 _____ 직 장 전 화 _____

* 추천 항목의 경우, 작성한 항목을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위의 경우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이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

2. 본문에는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취득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았음(우회적·간접적 기재도 불가)

3. 본인은 이 추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자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것임

4. 본인은 귀교가 이 추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임

5. 본인은 이 추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추천인 확인 서약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추천인의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6. 본인은 지원자가 2017학년도 전기 고등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위의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항목별 √ 표시)

2017년 _____ 월 _____ 일

추천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안산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본 추천서는 입학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 추천서는 다른 추천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직접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은 견본이며 지정된 접수사이트(원서 접수 시 공지)를 통해 작성·출력 후 본교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 및 인성영역 평가(띄어쓰기 제외 500자 이내)

- 지원 학생의 학습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생의 진로계획이 안산동산고의 설립목표,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지원 학생의 중학교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인성 요소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붙임4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자기소개서의 작성

- ① 자기주도학습 영역 (띄어쓰기 제외 900자)
(지원동기 및 자기주도학습 과정, 입학 후 학습 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등)
- ② 인성 영역 (띄어쓰기 제외 600자)
(핵심인성요소 관련 활동-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 *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교사 추천서/지도자 추천서의 작성

- ①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 ②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
- *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출

- *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는 1단계 원서접수 시 접수처에서 공지
-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음

1.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 금지 사항

- ①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름 등)을 절대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기재할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결표지 제외)
- ②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응시 경험, 한국어(국어)·수학·과학·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나 응시 경험,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이나 응시 경험, 각종 자격증 취득사항,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내 및 교외 수상 실적, 대회 참석 내용이나 경험 등 기재불가.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각종 자격증 취득 사항 기재 시 0점 처리)
*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해도 감점처리 됨
☞ 간접 기재 예시: “열심히 준비하여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함.”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음.” 등
- ③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신설)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2.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3.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영역

- 학생의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자격증 취득 사항 등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붙임5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지원 자격 기준

■ 1순위 지원 자격

<2018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3.28.)
 - 지원 자격 :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2017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기준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에 해당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차차상위계층, 2017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는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차차상위계층)에 해당

·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 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 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 부,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 부, 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 부,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2천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6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3만2천원(부)+2만6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8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 2순위·3순위 지원 자격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2순위·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3.2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2017.1월~10월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2순위·3순위 지원 자격 기준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단위 : 원)

분위 구분 (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 ※ 일반 학생 : 중학교에서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제출
 기회균등대상자 6번(학교장 추천)학생 : 학생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검증 추천

[중학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 일반 학생

- 대상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체(학교장 추천 학생 제외)
-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② 학교(업무 담당자)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③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입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한 후 제출

■ 학교장 추천 학생

- 대상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1순위 기회균등대상자 6번 해당 학생
-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③ 해당 고등학교에 추천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증빙서류 첨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으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 (구성)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
-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